

地球環境 論議動向 및 우리의 對應方向

尹 瑞 成*
Yoon, Seo Sung

I. 序 論

세계는 지난 수십년간 자연환경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지난 세기에 비해 높은 성장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産業化, 都市化過程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활동은 自然破壞와 環境汚染을 초래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예: 도시화, 산업화로 대기 수질오염, 토양악화, 유해폐기물발생 등)

특히 한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는 國境을 超越하는 環境問題, 全地球的 影響을 초래하는 環境問題가 대두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별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國際的 協力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예: 산성비,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따라서 환경은 성장신화의 희생 양에서 생존의 조건으로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구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도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人間環境會議(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는 人間環境宣言이 채택되었고 '73년 유엔環境計劃(UN Environment Programme)이 설립되어 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拘束力있는 國際環境協約(예: CITES,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國際的 環境協約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環境開發會議(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環境的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開發을 위한 實踐綱領인 “議題 21”이 채택되어 21세기 환경과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본틀이 제시되었다.

이하에서는 지구환경문제의 유형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地球環境問題의 類型

1. 越境性(transboundary) 環境問題

월경성 환경문제는 환경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운반 확산되므로써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여러 국가에 걸친 공유자원의 보존문제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地球的(global) 環境問題와는 달리 地域的(regional) 環境問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酸性雨

산성비는 화석연료인 기름, 석탄, 가스 등의 연소시에 대기중으로 배출된 황 및 질소화합물이 산화반응을 하고, 이러한 물질이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건물, 교량,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 廢棄物의 國境移動

산업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자 선진

* 環境部 次官.

국들이 자국내의 엄격한 처리기준을 피하여 폐기물 특히 유독성 폐기물을 처리능력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후진국에 내다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 밖에 移動性 動物, 鳥類 및 魚類의 保護問題, 黃沙問題, 地域海洋汚染問題, 여러 국가를 거치는 共有河川의 汚染問題 등이 포함된다. 월경성 환경문제는 비교적 영향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地球的(global) 環境問題

환경오염이나 환경악화가 전 지구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범지구적 협력이 요청되는 환경문제를 말한다.

□ 地球溫暖化

지구의 대기공간에서 우주로의 방사열 감소로 지구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온상승, 농업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다.

□ 오존층 破壞

프레온가스(CFCs)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로 생태계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층권의 오존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10년마다 3%의 비율로 오존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WMO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40일간 2,000만km²로 늘어나 사상 최대 기록을 보인바 있다.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자외선의 과다투과로 피부암 증가와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해양 먹이사슬의 파괴, 돌연변이 생물 발생, 농산물 수확감소 등을 초래한다.

□ 生物多樣性 減少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나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서식지 파괴 등으로 매년 2만5천~5만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UNEP,1992) 이러한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감소 뿐 아니라 먹이사슬의 단절로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밖에 지구온난화와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하는 熱帶林 破壞問題와 무절제한 경작과 방목, 산림의 남벌에 의한 沙漠化 現象 등이 주요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主要 地球環境 論議動向

1. 유엔차원의 論議(유엔環境開發會議 및 持續開發委員會)

가. 유엔環境開發會議(리우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92.6.3~6.14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78개국과 68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금세기 최대의 환경회의라 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持續可能한 開發目標達成을 위한 基本原則인 “리우선언”(전문과 27개 조문으로 구성)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世紀 地球環境保全 實踐綱領인 「議題 21」이 채택되었다.

특히 동 회의에서 현재의 개발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持續可能한 開發¹⁾이 공식적으로 유엔차원에서 환경과 개발을 위한 주요한 목표로 천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강조되었다. 즉 지구환경보전에 각국은 공동의 책임을 지며 범세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지

만 다양한 각국의 현실과 능력에 맞게 책임이 차별 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표명되었다.

〈“의제 21”의 구조〉

분야별	내용
전문 (1장)	전문
제 1 부 : 사회경제부문(2~8장)	•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제 2 부 :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9~22장)	•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제 3 부 :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23~32장)	•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 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 강화
제 4 부 : 이행수단 부문(33~40장)	•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이행 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우리나라 역시 지난 3월에 “議題21 國家實踐計劃”을 작성하여 環境과 開發을 統合시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의지와 노력을 천명 하였다.

나. 유엔持續開發委員會(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는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 된 “의제 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감시를 위하여 '92년 12월 개최된 제47차 UN總會 決議에 따라 經濟社會理事會(ECOSOC)산하에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9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環境淸淨技術 移轉問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財源 및 財政體系, 消費패턴의 轉換問題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地球環境保全이라는 대의에는 각국이 공감하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役割과 責任을 둘러싸고 先進國과 開發國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開發國은 지구환경문제가 歷史적으로 先進國의 責任이며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財政支援과 技術移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先進國은 개도국도 지구환경보전에 동참하여야 하며 能

力形成, 制度改善 등의 개도국의 제도정비가 선행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대립 되고 있다.

지속개발위원회는 UN차원의 환경논의의 주요한 장으로서 구체적인 환경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持續可能한 開發이라는 目標達成을 위한 多樣한 提案을 摸索하는 論議의 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립되는 이슈보다는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수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 등 경제적 수단 도입문제, 월경성 대기오염 방지문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방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主要 國際環境協約上 論議 動向

현재까지 170여 개의 國際環境協約이 체결되었고 앞으로도 환경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중 31개의 주요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가. 氣候變化協約(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대기중 Co₂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이 장 단 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溫室가스 排出抑制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배출통계 작성 및 보고 등에 대해 先進國과 開發國을 구분하여 義務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동 협약에 의하면 2000년까지 Co₂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는 의무와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 재정 기술적 지원의무를 지고 있다.

동 협약과 관련하여 제1차 당사국회의('95.3, 베를린) 이후, 先進國의 溫室가스排出 減縮義務의 強化, 先發開發國에 대한 새로운 義務賦課, 감축의무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共同履行²⁾方案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향후 동 협약의 후속협상에서 각국의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OECD 가입과 관련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다.

나. 오존층 破壞物質에 관한 몬트리올 議定書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85년 채택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하에 '87년 제정되었고 그 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동 의정서는 CFCs, 할론 등 規制對象物質(95종)을 指定하고 生産量 및 消費量을 단계적으로 減少('96년부터 사용금지)시키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의

정서 加入國과 非加入國간의 규제대상물질의 輸出 入을 禁止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은 의정서에 규정된 8종의 CFC를 국민 1인당 0.3kg이내로 사용할 경우 10년간의 유예기간 동안(200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 의정서와 관련 CFC代替物質開發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技術移轉問題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 生物多樣性協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生物多樣性的 保全과 持續可能的 利用을 목적으로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생물종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생물다양성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제 공국과 신 기술 개발국간 공정한 이익 배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과 관련하여 선진국 생물공학 신제품의 실험장화를 우려하는 개도국과 유전자원보호국인 선진국간 生物安全性議定書(Biosafety Protocol)구 속력의 정도를 두고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라.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種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및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野生 動植物 및 生態系를 保護하기 위해 '73년 워싱턴에서 채택됐으며 일명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한다.

동 협약은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規制대상 동식물을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시 관 계기관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코뿔소

등 주요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호골, 코뿔소뿔 등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호랑이와 코뿔소 문제 이외에도 곰, 고래 및 상어의 남획과 불법거래에 대한 규제를 CITES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어 한약재 사용 등과 관련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處理의 統制에 관한 바젤協約(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바젤협약은 국가간 有害廢棄物의 移動을 統制하므로써 처리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유해폐기물 투기장화 및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UNEP를 중심으로 '87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마련된 후 '89년에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規制對象 廢棄物(수은, 카드뮴 등 유해폐기물 47종)을 指定하여 동 폐기물의 이동시 갖추어야 할 절차 및 수출입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95년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현재의 최종처리를 위한 폐기물 이외에 '98년부터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OECD국에서 비OECD국으로 수출 금지가 결정되었으며, 올해 4월 10차 기술실무회의에서는 고철, 밀스크릴, 폐고무가 유해폐기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해폐기물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有害性 特性基準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동 기준의 합의 및 有害廢棄物의 對象擴大問題를 둘러싸고 각국의 논쟁이 예상된다.

〈國際環境協約의 國內産業에 대한 影響〉

관련 협약	규제 대상	영향
몬트리올의정서	CFC,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공정에 있어서 냉매, 세정제, 발포제로 CFC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 냉동 기기, 화학산업에 영향 소화제인 할론, 살균제인 메틸브로마이드 등을 사용하는 관련산업의 원료수급 및 비용증가 예상
기후변화협약	CO ₂ 등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연료유 생산 및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산업 등에 영향
바젤협약	47개종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을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유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원의 주권행사로 인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약, 유전 공학적 안전성에 의한 무역규제가 예상 농업, 축산업, 제약업 등에 영향
CITES	호골, 서각 옹담, 사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동식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제약산업,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피혁산업, 화해 농업 등에 영향

그 밖에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에는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濕地보전에 관한 람사協約, 沙漠化 防止를 위한 協約, 廢棄物 및 其他物質의 投機에 관한 海洋汚染 防止에 관한 런던協約 등이 있다.

3. 環境과 貿易의 連繫 論議 動向

가. 論議 背景

환경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國際環境協約 상 貿易制限措置와 개별국가의 自國法에 의한 貿易制限措置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목적의 무역제한조치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環境保護主義와 自由貿易主義간

상호 調和問題가 국제적 논의의 주요 이슈로 대두 되었다.

〈各國의 環境規制와 關聯國內産業〉

구분	시행국	내용	관련산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EU, 미국	자동차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방지	자동차
경고라벨 부착규칙	미국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CFC 경고 라벨 부착	반도체, 가전, 기계, 화학
포장쓰레기 규제법	독일	생산자의 직접회수 및 재생포장재 사용 쿼터 설정 등을 통해 쓰레기 오염 방지	전 업종
에너지세/탄소세	유럽각국	CO ₂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사용 억제	철강, 비철금속 제지, 자동차 섬유, 화학
환경마크제	선진각국	환경상품에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구매유도와 무공해상품 개발촉진	전 업종

※자료 : 한국산업은행, "Green Round에 대비한 주요업종별 대응방안, 1994 참조 보완하였음.

나. 論議經過

'92.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무역정책의 상호조화(mutually supportive)가 필요하다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기본 입장이 표명되었고 OECD, UNEP, UNCTAD 등에서도 환경과 무역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WTO는 종래 GATT가 환경문제에 소홀했다는 인식 하에 마라케시 閣僚會議('94. 4)에서 채택된 '貿易과 環境에 관한 決定文'에 따라 貿易環境委員會(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CTE)를 설치하여 현 무역규범이 환경보전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지, 무역규범의 보완 필요성이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주요 論議內容과 爭點

동 의제는 국제환경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무역조치가 WTO무역규범과 상충될 경우 동조치를 어떤 양식으로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先進國은 WTO차원에서 환경 무역에 대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해 WTO貿易規範을 改正³⁾ 또는 擴大解釋하고자 하고, 開發國은 향후 문

제가 발생시 事例別로 WTO 關聯規程⁴⁾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를 포괄적으로 무역규범하에서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각국이 무역제한조치를 확대시키고, 향후 국제협약상 무역제한조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에 따라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議題 3: 環境마크, 環境稅 등과 WTO規定의 관계〉

동 의제는 환경세, 환경마크제도 등 환경조치의 차별적 무역효과를 규율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규정상 추가 또는 수정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특히 環境마크制度(eco-labelling)가 生産方式(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自發的인 制度로서 무역제한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TBT(技術障壁協定)협정상의 통보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 각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환경마크제도의 무역제한효과를 줄이고 제

〈貿易環境委員會 10개 主要議題〉

의제 1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정과 환경목적 무역조치와의 관계(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포함)
의제 2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과 현저한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의 관계
의제 3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과 다음 조치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목적의 부과금과 조세 • 표준, 기술규정, 환경마크, 포장, 재활용 등 환경관련 제품요건
의제 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현저한 무역효과를 유발하는 환경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다자무역체제(WTO)의 규정
의제 5	다자무역체제(WTO)의 분쟁해결절차와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관계
의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특히 개도국과 후진국에 대한) • 무역제한과 왜곡의 제거에 따른 환경적 편익
의제 7	국내 판매금지물품의 수출문제
의제 8	지적재산권 협정의 환경관련 조항
의제 9	환경과 서비스
의제 10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문서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

- 1) Brundland 보고서에서 1987년 처음으로 정의되었음.
- 2)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 실적 일부를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함.
- 3) 자유무역주의원칙의 일반예외조항인 GATT 제20조 (b)항(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을 수정하여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장
- 4) 국제환경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조치가 필수적이라면 GATT 25조의 의무면제 조항에 근거하여 사후에 회원국의 다수결로 동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

도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WTO규범의 추가적 규정이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딜레마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議題 4: 貿易에 영향을 주는 環境關聯 措置의 透 明性〉

동 의제는 환경관련 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환경관련 조치 수립시 신속한 通報節次와 관련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環境問議處 (environmental enquiry point)의 필요성에 관련된 이슈이다.

선진국은 기존 투명성절차의 효율적 활용,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개도국은 기존 투명성 절차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조치와 관련된

별도의 환경문의처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議題 6: 環境措置의 市場接近制限과 貿易歪曲措置 除去의 環境便益〉

동 의제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조치가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와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를 철폐하므로써 환경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이 현재의 農業補助금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농업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議題 8: 知的財産權協定の 環境關聯條項〉

동 의제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규정이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이양 및 이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와 동 협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기술의 이전 및 동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려고 개도국이 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 향후 논의방향

WTO 貿易環境委員會는 '96.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WTO 閣僚會議에 제출하기 위해 '96년 후반기부터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본격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논의 방향은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로 각국의 제안사항을 회원국이 토론했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현 무역규범을 수정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를 진행시키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환경과 貿易의 連繫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技術水準과 환경親和的 産業構造를 갖춘 先進國을 중심으로 環境保全이라는 대의를 배경으로 國際貿易의 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自國의 競爭力을 確保하려는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OECD의 環境論議

가. 論議背景

도시화, 산업화로 초래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회원국간 공유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環境政策을 調整할 必要性이 증가되어 OECD는 環境政策委員會(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70. 7월에 설립하고 '85년 대폭 확대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동 위원회는 環境政策과 經濟政策의 統合, 環境과 貿易의 關係, 化學物質 危險低減, 廢棄物管理分野에서 國家間 政策調和 등의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地球環境保護를 위한 ozone층 보호,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수립, 생물다양성 보호 등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서도 OECD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나. 主要 論議 動向

'96년 2월 개최된 제5차 OECD 環境閣僚會議은 OECD국가들의 環境成果를 評價하고 현재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共同行動方案 및 21세기 環境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OECD의 역할 등을 광범위하게 토론했다.

우선 동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상 공약강화,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등 氣候變化問題, ozone층 破壞, 大氣質 및 水質改善, 化學物質 安全性 確保, 交通과 에너지문제, 環境과 貿易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1세기 環境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環境基準 強化가 經濟的 效率과 成長을 위한 技術革新, 長期的 雇傭增大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結果指向的 戰略(result-oriented strategy), 原因者負擔과 豫防原則 強化, 持續possible한 消費와 生産, 生態效率性 추구, 政府活動의 環境性 고려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표명되었다.

그리고 회원국의 확대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규회원국들도 국제환경협약상 OECD회원국의 책임 수준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 명시적으로 표명되었다.

다. 향후 전망

OECD회원국이 가장 산업화되고 환경성적이 높은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국제환경논의에서 OECD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OECD는 향후 세계화와 환경정책, 보조금과 조세유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수단 등의 專門的인 分野에 중점을 두고 환경논의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OECD의 환경논의는 OECD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과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V. 우리의 對應方向

1. 環境基準과 環境政策의 先進化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증가되고 있는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친 시각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OECD가입과 관련 OECD국가들이 주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확대, 경제적 유인활용, 유독 물질의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강화, 경유사용 증량차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環境規制基準을 先進國 水準으로 上向 調整하여 2000년까지 OECD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의 요율 및 대상품목 조정,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개선 등 經濟的 手段을 活性化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품포장규제에서 제품사용 후 회수 재활용 의무부과를 확대하는 선진국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기준 강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확대, 폐자원의 원료사용 의무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평가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특정제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유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물질개발을 위한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環境技術開發 및 環境產業育成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청정기술 및 오염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높아 가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1년까지 4,315억원을 환경공학 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96년에는 9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環境親和的 企業經營 및 生産活動 誘導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 경영방식을 추구하도록 지원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環境親和的 企業指定制度를 강화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環境마크 制度를 개선, 부여기준 및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제품주기(Life-Cycle)에 걸친 환경영향 관련기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環境外交의 強化 및 國際環境協約에 對備

UNCED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안보·경제와 더불어 향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환경외교의 비중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협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환경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환경외교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國際環境協力事業 및 GEF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KOICA, EDCF 등을 통해 對開途國 環境協力を 強化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의 증가에 따른 國內 關係法令 및 制度 改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의정서 협상에 대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패턴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5. 에너지 低消費型 社會構築

OECD는 신규회원에게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향후 부속의정서 협상결과에 따라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80%로 프랑스(53%), 미국(64%), 일본(73%)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사용증가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1991년 11.6%)중의 하나로서, CO₂ 배출규제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 효율향상정책의 지속적 추진, 수요관리강화, 에너지 수요 부문별 중장기전략의 수립, 기술적·경제적 대안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기의 보급촉진, 천연가스 등 연료대체확대, 실용화에 접근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술 등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및 저공해 유발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추진이 필요하다.

6. 環境親和的 消費行態를 위한 國民環境意識 水準 向上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 파괴적인 소비행태

로부터 자원절약적 소비행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확립하고 재생기술개발 및 재생품 수요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홍보의 강화, 환경마크 상품의 우선 사용 유도, 환경친화적 기업상품의 정부차원의 자발적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V. 結 論

앞으로 환경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논의와 국제협력은 더욱 증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논의는 결국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환경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